『예술인 의료비 지원』사업 공고

대전문화재단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예술 창작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 중중질환으로 인 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2020. 2. 21.

(재)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

1 지원 대상

- 과도한 의료비 (수술비, 입원비, 약제비 등)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
 ※ 4대 중증질환 우선지원
- ㅇ 대전지역에 거주하면서「예술인 복지법」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
 - ※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만 70세 이상 원로예술인에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 경력심사로 대체 가능

2 신청 자격

- o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% 이하이며,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
 - 1) 2019년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%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금액 (원/월)	1,365,606	2,325,222	3,008,026	3,690,829	4,373,632	5,056,435	5,739,238
 금액 (원/년)	16,387,277	27,902,669	36,096,307	44,289,946	52,483,584	60,677,222	68,870,361

- ※ "가구원"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중 성인
- 2) 자산 기준 (광역시): 1억 8,800만원 이하
- ㅇ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예술인
 - ※ 단, 소득·자산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경제상황에 비해 치료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등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료비 지원 될 수 있음
 - ※ 각종 단순 검사비, 의원 등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지원 제한

3 지원 내용

- ㅇ 지원금액: 1인 최대 500만원
 - 질병 및 상해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 - 4대 중증질환 우선 지워
- ㅇ 지원기가: 신청일 ~ 2020년 3월 27일까지 청구분 지원
- o 지원항목: 중증질환 중심의 입원비, 수술비, 검사비, 약제비, 간병비, 보장구구입비, 재활 치료비, 외래진료비 등 실질적인 본인 부담금 지원
 - ※ 간병비, 보장구 비용의 경우 가족관계, 질환의 상태 등을 고려해 해당항목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
 - ※ 검사비는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(소견서 필요) 및 응급 의료비용 등을 지원하며, 단순 검사 또는 초기 질환진단을 위한 지원은 지양함
- ㅇ 지원방법: 의료기관 직접 지급 원칙
- ㅇ 지워 상세 항목

지원항목	지원내용	비고	
입원 및 수술비 입원, 수술 등 제반비용(중증질환 우선지원)		상급 병실료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, 병원 내부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인정	
고액 검사비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(의사소견서 제출 필수)		MRI, CT 촬영 등	
외래진료비	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	·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, 혈액 투석 등 지원 ·희귀의약품 사용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의약품 구입 지원 가능(소견서, 처방전 제출 필수)	
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	해당질환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(진단서 및 처방전 필요)	노인용 단순 보장구 및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	
- 해당질환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경 -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 지급하는 건에 한함 - 최대 3개월 200만원 한도 내 지원		수술 및 입원비 지원을 우선하며, 간병비 지원은 중증질환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함	
재활 치료비 등	물리치료비 등		
지원제외	- 기 결제된 의료비 소급지원 불가 - 기 가입된 사보험 보장 의료비 - 단순 검사비, 소형 의료기관에서 단기치료 및 검사가 가능한 항목 - 시력교정, 치과치료, 미용관련 의료서비스, 정신과 치료	·치과는 상해 또는 중증질환 발생으로 인한 치료	

- ※ 선정 후 1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
- 0 지워 제한
 - 동일한 질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및 대전문화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 2회 연속 선정·지원을 받은 예술인 (동일질환 여부 질병코드로 판단)
 - ※ 지원종료 후 1년을 경과하면 재신청 가능
 - ※ 사업참여 횟수는 당 사업 예산교부를 기준으로 함(예시: 2017년 및 2018년 사업 예산으로 의료비지원을 받은 자는 2회 연속 지원으로 봄)

- 기 결제된 의료비 (소급지원 불가)
- 질환종류 및 항목: 일반적인 시력교정술·치아교정 및 틀니시술·미용 성형, 정신과 진료비, 제증명료, 보호자 식대 및 각종 단순 검사비, 의원 등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
- 중복지원: 민간보험 및 타 국가지원금, 기관 등의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되고 의료비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
 - ※ 선정자의 대해 해당병원 등에 중복지원 제한 협조 등 요청
-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
▲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

- 신청기간: 공고일 ~ 2020. 3. 13. (금) 17:00 ※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미김될 수 있음
- ㅇ 신청방법 (택 1)
 - 우편신청: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32 대전예술가의 집 402호 대전문화 재단 예술지원팀 예술인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(우 34944)
 - 이메일신청: toyrang@dcaf.or.kr
- 제출서류 ※ 심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구분	제출 서류 (필수)	비고
신청서	신청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	만 7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경우, 경력증명자료 별도 제출 가능
질환상태	의사소견서(진단서), 입퇴원확인서, 진료비 내역서(중간계산서)	치료 진행 중인 경우 입·퇴원확인서, 진료비 내역서 등 제출
	(가구원 관련 서류)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	
소득, 재산 관련 서류 (주민등록상 1촌 직계가족 서류 포함)	(소득, 재산 관련 서류) - 건강보험납입내역서 : 최근 12개월 납부 내역 발급 -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: 신청 전년도 서류 - 소득확인증명서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) : 신청 전년도 서류 발급 (재산 관련 서류) 전·월세 계약서 *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, 무료 거주자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제출	 수급자, 차상위계층 경우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 외 서류는 해당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개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, 부채증명서, 금융거래 확인서 제출 기능
보험가입여부	- 보험가입조회서	

5 지원 절차



- ㅇ (행정심의)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
- (의료심의) 의료진, 의료사회복지사 등 3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, 질환상태,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지원 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

6 의료비 지원 방식

-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(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음)
- ㅇ 의료비 지원금 지급 마감: 2020. 3. 27.(금) 청구 분까지 지원

7 유의사항

-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,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및 대전문화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ㅇ 의료비 지원 결정시 신청 시 기재한 질환에 대해 의료비가 지원됩니다.
- 이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,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.
- 선정 이후 의료비 지원결정금액이 실제 의료비 청구금액과 과도한 차이가 나는 경우 지원결정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문의: 전화 042) 480-1033 / 담당자 이메일: toyrang@dcaf.or.kr

참고 제출서류별 발급처 안내 및 참고사항

지스티크	발급장소		
접수서류	인터넷 발급	오프라인 발급	
소견서, 입·퇴원 확인서, 통원치료확인서 등	_	해당 의료기관	
주민등록등본	민원24 (www.minwon.go.kr)		
가족관계증명서	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(efamily.scourt.go.kr)	ᄌᇚᄱᄓ	
과세증명서	민원24 (www.minwon.go.kr)	- 주민센터 -	
기초생활수급증명, 차상위계층 증명 등	민원24 (www.minwon.go.kr)		
건강보험 납부확인서	국민건강보험공단 (www.nhis.or.kr)	국민건강보험공단	
소득확인증명서 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)	홈택스 (www.hometax.go.kr)	지역 세무서	
금융거래확인서, 부채증명서 등	_	은행	
보험가입조회서	생명보험협회(www.klia.or.kr), 손해보험협회(www.knia.or.kr)	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	

⁻ 예술활동을 증빙할 자료 (만 70세이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등 해당자에 한함) (예시) 도록, 공연팜플릿, 저서, 음반 등, 그 밖에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